



보도시점 2024. 2. 28.(수) 14:00 (2024. 2. 29.(목) 조간)

외국인력 고용관리 및 체류지원을 위한 중앙-지방-민간 칸막이 없는 협업 선언

- 이정식 장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
- 상담, 교육·훈련, 주거 지원 등 중앙부처간, 중앙-지방간 양해각서(MOU) 체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8일(수),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에 따라 자치단체 의견 수렴 활성화를 위해 중앙-지방(광역지자체) 협의회를 정례화(반기별)하기로 결정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5~6만명 수준이던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작년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2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6개월 동안 7개의 신규 업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산업계의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고용허가제를 확대·개편*하고 있다.

* ▲ '24년 E-9 도입 규모 5만5천명 확대, ▲사업장별 고용 허용한도 2배 수준 확대, ▲비수도권 뿌리중견기업, 택배업, 공항지상조업 상하차,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 등

전체 외국인근로자들의 규모와 업종·직종·국적 등 다양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산업 현장에 조기에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관계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들의 도입 확대와 체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업종별

주무부처도 지역과 산업에서 각각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기존 '중앙-지방(광역)' 협의회*의 논의 구조를 확대하여, 관계 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외국인력(E-9) 정책 관련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

* 1차('23.7월):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 등 현장 의견에 기반한 고용노동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위한 공감대 형성

* 2차('23.11월): 「'24년 외국인력(E-9) 도입 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의 외국인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맞춤형 체류지원(근로여건, 안전보건 확보 및 주거·생활지원 등) 방안 논의

외국인근로자 관련 확대된 논의가 처음으로 시도되는 자리인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여 업종별 주무 부처와 관련 협·단체,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도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정식 장관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며,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관련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두 외국인근로자들의 주거, 교육·훈련, 산업안전, 임금체불 예방 등 체류 지원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찾고, 중앙-산업-지역간 협업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요

[붙임2]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붙임3] 4개 업종 고용노동부 - 주무부처 - 관련 협·단체간 양해각서

[붙임4] 고용노동부 - 17개 광역자치단체간 양해각서

[붙임5] 4개 업종 고용허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붙임6] 외국인 고용 관련 자치단체 우수사례

담당 부서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오기환 (044-202-7157)
		담당자	팀 장 사무관	박진영 (044-202-7735) 이정석 (044-202-7223)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재경 (044-201-2151)
		담당자	사무관	이혜주 (044-201-2170)
담당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수진 (044-203-2861)
		담당자	사무관	임효정 (044-203-2870)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광물자원팀	책임자	팀 장	정대환 (044-203-5372)
		담당자	사무관	김창수 (044-203-5257)
담당 부서	산림청 산업안전보건일자리팀	책임자	과 장	최현수 (042-481-1850)
		담당자	사무관	안진호 (042-481-1851)



1

추진 배경

- 외국인력(E-9) 도입 확대에 따라, 중앙부처 - 지자체(광역시) - 업종별 협·단체 간 협업을 통한 효과적인 고용·체류관리 개선방안 추진 필요
- '24년에는 기존 '중앙-지방(광역시)' 협의회 의 논의구조를 확대하여, 凡 부처 및 지역, 민간을 아우르는 고용허가제 정책 협의 기구로 활용

2

개 요

- [일시] '24. 2. 28.(수), 14:00 ~ 15:30
- [장소] 로얄호텔 서울(3층 그랜드볼룸, 서울 중구 명동길 61)
- 참석 대상
 - (중앙부처) 고용부 장관(주제), 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산림청
 - (지자체) 17개 광역지자체
 - (협·단체) '24년 외국인력 신규 허용 업종* 관련 협·단체

*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3

주요 내용

- ①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을 위한 MOU 체결
 - * ① [업종] 4개 업종(음식점업·호텔업·임업·광업) 고용부-주무부처-협·단체 간 3각 MOU
 - * ② [지역] 고용노동부 - 17개 광역자치단체
- ② '24년 외국인력(E-9) 도입 및 관리방안(고용부)
 - * 2024년 외국인력 도입 계획, 제도개선 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
- ③ 신규 허용업종 기대효과 및 향후 관리방안(주무부처)
 - * 4개 주무부처(농식품부·문체부·산업부·산림청) PPT 발표
- ④ 외국인력 관리·지원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 및 건의사항(지자체)
 - * 3개 지자체(경북·전북·강원) PPT 발표

인사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기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부 실장님과

산림청 차장님을 비롯한 문체부·산업부 국장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님과 실장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계 협회장님,

감사합니다.

협업 필요성

여러분! 대한민국은 인구와 산업의 격변기에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와 맞물려

산업구조와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업종과 직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연간 5~6만명 수준이던 도입 규모를
작년에는 12만명, 올해에는 16만5천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고용허가 업종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지역, 산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는 부처간, 중앙-지방정부간, 민관간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에 대해 이해가 깊은 부처와 업종 단체,
가장 가까이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만나고 계시는 지자체에서도
깊이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찾아
협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협·단체 역할

우선 고용노동부는 산업계 목소리에 더욱 발빠르게 대응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인력이 되도록
다음 세가지의 정책방향을 갖고 고용허가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습니다.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둘째, 인력난을 호소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고,
가급적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점진적인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협업을 확대하여
외국인근로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사업주는 촘촘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임금 체불, 산업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와 업종 단체, 지자체에서는
관련 업종과 지역의 사업주가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관련 단체에 안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고용 사업장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인 경우가 많아
걱정이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이를 간과하여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사업장에 산재 위험이 없는지 진단하고,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을 고용 중인 사업장에는 이미 대진단 참여를
안내드렸습시다만,
오늘 참석하신 부처와 협회, 지자체에서는
앞으로 외국인력을 희망하는 회원사와 관내 사업장 등에
안내하는 등 근로자가 아프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4개의 업종은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다는 점에서
외국인근로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합니다.

따라서 이 4개 업종의 사업주들에게는
장시간 근로 예방과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전제로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무부처와 합동으로 해당 업종의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 상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국어 상담원을 채용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
정부가 직접 외국인력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외 문화, 교류, 의료, 생활 지원은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체류지원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각 부처와 업종 단체는
산업계의 동향과 작업상의 특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업황 및 인력수급 현황 분석, 노사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인력 규모를 알려주시면
고용노동부는 제 때에 부족하지 않게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회원사, 관련 단체, 기업들에게
고용허가 신청 절차와 시기 등을 안내해 주시고,
업종별로 특화*된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업] 임업인종합연수원(청송)
[광업] 광산안전센터(태백), 마이닝센터(익산)

마지막으로, 해당 업종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활용해 주거와 근무 환경 개선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일선에서
현장감 있는 상담과 생활밀착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충청북도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외국인근로자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도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외국인정책실을 신설하여
한국어·기술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는 「글로벌학당」을
올 2월 개소하여 외국인유학생과 근로자에게
한국어와 법·제도, 문화 등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에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등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서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겪는 갈등과 애로가
곧 지역의 문제임을 공감해주시고,

주거,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 고충 상담 등을 위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시는 한편,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증층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와주시면

외국인근로자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공유·확산시키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중앙부처 상호간,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칸막이를 허물고 더 많은 소통과 협업을 해나간다면
현장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외국인 고용 및 체류관리에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민관간
협업이 확대되어
더 자주 만나뵙고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외국인력이 현장에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역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데
다같이 힘을 모읍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중앙·지방협의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종별 업무협약서 - ① 음식점업

**음식점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4년부터 음식점업에 시범 실시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선발·도입, 사업주 신청, 고용관리와 체류지원, 특화 교육·훈련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외국인력의 도입 및 체류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외국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선발·도입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2.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외국인력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업무에 조속히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협력하여 언어·안전·직무교육 등 음식점업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한다.
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이 임금채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원사, 관련 단체,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5.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사업과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 문안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위 협약서에 합의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024년 2월 2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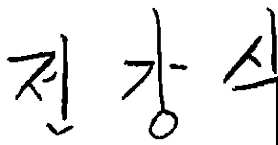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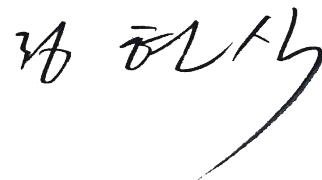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한국외식산업협회
협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협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협회장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4년부터 호텔·콘도업에 시범 실시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선발·도입, 사업주 신청, 고용관리와 체류지원, 특화 교육·훈련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호텔업협회,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외국인력의 도입 및 체류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외국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선발·도입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2.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호텔업협회 및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외국인력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업무에 조속히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국호텔업협회 및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와 협력하여 언어·안전·직무교육 등 호텔·콘도업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한다.
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이 임금채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호텔업협회 및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원사, 관련 단체,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사업과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호텔업협회 및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 문안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호텔업협회 및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는 위 협약서에 합의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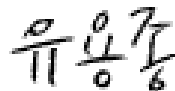
2024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한국호텔업협회
협회장



한국휴양콘도
미니엄경영협회
협회장

임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4년부터 임업에 시행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선발·도입, 사업주 신청, 고용관리와 체류지원, 특화 교육·훈련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외국인력의 도입 및 체류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외국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선발·도입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2. 고용노동부,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외국인력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3. 산림청은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업무에 조속히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하여 언어·안전·직무교육 등 임업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한다.
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이 임금채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원사, 관련 단체,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5. 산림청은 소관 사업과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조합중앙회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 문안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산림청 및 산림조합중앙회는 위 협약서에 합의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024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산림청
차장



산림조합중앙회
사업대표이사

광업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4년부터 광업에 시행하는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선발·도입, 사업주 신청, 고용관리와 체류지원, 특화 교육·훈련 등에 관해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업협회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각 기관은 외국인력의 도입 및 체류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외국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선발·도입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2.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광업협회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외국인력 고용 시 준수사항 등을 사업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3.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서 업무에 조속히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광업협회와 협력하여 언어·안전·직무교육 등 광업 특성에 맞는 특화 교육·훈련 방안을 마련한다.
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광업협회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회원사, 관련 단체, 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5.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관 사업과 기타 자원을 활용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광업협회가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 문안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및 한국광업협회는 위
협약서에 합의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024년 2월 28일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한국광업협회
협회장

고용부-광역지자체用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지원 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고용노동부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선발·도입, 사업주 신청, 고용관리와 체류지원 등에 관하여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내용)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력의 도입 및 체류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고용노동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신속하게 외국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선발·도입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한다.
2.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주가 고용허가제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도 및 신청 절차, 일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한다.
3. 고용노동부는 차년도 외국인력 도입 계획 수립 시, 외국인력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별 외국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외국인력 수요를 파악·분석하여 고용노동부의 수요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4.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이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고, 적합한 숙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실히 이행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5.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력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지역의 구성원으로 적응·융화될 수 있도록 주거시설 개선 및 상담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6.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해지) 이 협약 문안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은 「고용허가제 관련 중앙-지방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협약서에 합의하고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한다.

2024년 2월 28일

최현식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이해우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신창호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백찬준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장

신창호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

권경민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
(代) 일자리경제과장

정호등

울산광역시
경제산업실장

남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장

오주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종석

강원특별자치도
경제국장

김득환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유재홍

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나해수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소통협력국장

위광환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

이강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윤인국

경상남도
교육청년국장

김인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장

① 음식점업(농림축산식품부)

- (개요) 음식 종류(한식)와 지역(주요 100개 지역), 업력(5인 미만은 7년 이상, 5인 이상은 5년 이상), 직종(주방보조원)을 한정하여 시범 도입 결정('23.11월) → 외식업 구인난 해소 기대
- (신청 안내) '24.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으로, 2월부터 사업주용 안내서를 제작·배포하고 부처 및 관계부처 SNS 등을 통한 홍보
- (특화 교육)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사업장에서 현장 OJT(8시간) 실시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사업장에 배포 예정
- (체류 지원) 사업주의 고용허가 신청 전에 전일제 근무, 장시간 근로 예방, 숙소 알선 노력 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의무 안내, 민관 협의체('외식산업 발전포럼')에서 체류 지원 방안 논의 추진
 - * 장시간 근로 예방 및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알선) 등 근로자 정착 지원
-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5~11월)

② 호텔·관광업(문화체육관광부)

- (개요) 지역(서울·부산·강원·제주)과 직종(건물청소, 주방보조)을 한정하여 시범 도입 결정('23.11월) → 호텔·관광업 구인난 완화 기대
- (신청 안내) '24.4월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으로, 3월부터 사업주 대상 설명회 개최하여 제도 개요와 고용관리 방안 안내
- (특화 교육) 한국호텔업협회 주관으로 총 16시간의 특화교육 실시 예정
 - * (기초교육) 호텔·콘도산업의 이해, 고객응대, 영어·한국어, 위생·안전 등
 - * (호텔·콘도 특화 교육) 객실 정비, 시설 관리, 식음료 및 조리 관련 이론 및 실습
- (체류 지원) 문체부·지자체·관련 협회 공동으로 사업장의 외국인 체류 관리 현황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4~11월)

③ 임업(산림청)

- (개요) 육림, 벌목, 종묘 등에 한정하여 고용허가제 적용 결정('23.11월)
→ 고강도 노동이 필요함에도 고령화된 임업 노동시장에 임·산업 안정화 및 산재 예방 기대
- (신청 안내) '24.7월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으로, 4~5월 권역별 사업주 설명회 개최, 5월 홍보자료 배포 예정
 - * (기 추진) 관련 협·단체 간담회('23.12월), 추진계획 설명회('24.1월, 2회), 시책교육(2월, 5회)
- (특화 교육) 자체 교육기관(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을 활용해 총 120시간의 특화 교육* 실시 예정
 - * (기초교육) 안전보건, 관련 법률, 고충 상담, 한국문화 등 적응교육
 - * (임업 특화 교육) 임업의 이해, 작업 도구 및 장비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처치 등 임업 특화교육을 입국 후 2개월 내에 실시하고 사업 비수기에는 보수교육
- (체류 지원) 임업 사업장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실태 확인, 장시간 근로 예방, 숙소 제공 노력 등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의무* 안내 등
 - * 장시간 근로 예방 및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알선) 등 근로자 정착 지원
- 외국인력 운영관리 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25년부터는 체류지원 및 운영체계 고도화 추진

④ 광업(산업통상자원부)

- (개요) 사업 규모(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 한정하여 고용허가제 적용 결정('23.11월) → 주요 광산업체(60개社) 구인난 해소 기대
- (신청 안내) '24.7월부터 고용허가 신청 접수 예정으로, 접수 기간 전 주요 광산업체 대상 안내 예정
- (특화 교육) 자체 교육기관(익산 마이닝센터, 태백 광산안전센터)을 활용해 4주간의 특화 교육* 실시 예정
 - * (직업교육) 광업 생산 공정(채광, 운반, 파쇄) 및 배수, 장약 보조, 케이블 설치 등 광산 배치 시 담당업무, 업무 실행 시 필요 장비 사용법 등
 - * (안전교육) 광산 내(갱내, 갱외)에서 작업 시 안전교육
- (체류 지원) 외국인 고용 사업주의 의무* 안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사업장의 외국인 체류 관리 현황 점검 예정
 - * 장시간 근로 예방 및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알선) 등 근로자 정착 지원

1 (경북)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및 '경북 글로벌학당' 시범 운영

- ◆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24.1월 개소, 구미시, 전담인력 4명)
 - 기관별로 분산된 외국인 지원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 **광역비자·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전담기관, **유학생 일자리 연계**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 ◆ 「경북 글로벌학당」 시범 운영('24.2월 개소, 유학생 등 680명 대상)
 -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에게** 실생활에 필요한 법·제도, 한국어를 교육하고, 경북의 문화,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여 **지역 정착 유도**
 - * 교육내용: 한국어 수업, 일자리 체험, 산업현장 방문, 한국 법·제도, 문화체험 등
- ◆ 기타 체류지원
 -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활성화 사업**(7개 시군, 14개소), 외국인근로자 화합행사
→ ▲경주: 9월 축구대회(18팀, 800여명), ▲구미: 10월 문화축제(1,000여명)

2 (전북)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을 외국인 지원 거점기관으로 운영 → 한국어·기술·교육 등 정착 지원사업 추진

- ◆ 진흥원: 기존 1국 3팀 13명 → **3실 4팀 22명(외국인정책실 신설, '23.1월)**, 교류협력실 내 **외국인교류팀** 운영 → 외국인 지원 거점기관 역할
- ◆ 추진사항
 - 외국인 주민 지역정착 플랫폼 구축,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찾아가는 법률·행정·노무 상담 프로그램** 및 **외국인 기술교육 등 정착 사업**(13개 사업, 7억원)
 - **지역 내 외국인력 수요 파악**('24년, 4천만원): 도내 산업·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규모 파악
- ◆ 기타 체류지원
 -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익산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외국인근로자 쉼터, **"따뜻한 전북, 특별한 전북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예정)

3 (강원) '외국인근로자 대상 공공기숙사' 조성 및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 ◆ **외국인근로자 공공기숙사 운영 등 주거시설 조성**(철원군, '24.4월 입주 예정)
 - * ▲장소: 철원군 근남면, ▲수용인원: **24명**, ▲사업비: 19.7억원, ▲공사기간: '22.9.~'23.6.('24.4월 입주), ▲운영자: 철원군 강화농협
- ◆ **'24년도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사업**(주문진항, 속초항 2동 신축)
 - * ▲주문진항: 사업비 10억원, '24~'25년 건립 예정, 설계용역 중(~'24.2월), ▲속초항: 사업비 20억원, '24~'25년 건립 예정, 설계용역 중(~'24.3월)